

501(c)(3) 공공자선단체에 대한 선거 점검 사항

선거해를 맞아 선거 관련 활동은 반드시 공정성을 유지해야함

연방조세법은 501(c)(3) 조항에 해당되는 자선단체들이 공직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연방조세법은 자선단체들이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연방조세법은 자선단체들이 찬반투표제 선거활동 뿐만 아니라 유권자 등록과 교육 등을 포함한 폭넓고 다양한 공정 선거 관련 활동들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세청은 501(c)(3)에 해당되는 단체의 소위 “선거 운동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는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후보 또는 후보들이 속한 단체의 당선 가능성에 도움을 주거나 방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후보자들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의 당적 보유 여부를 무시한다고 해도, 또 선거 자체가 정당과 관계없는 선거라고 해도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특정 여성 또는 특정 라티노인을 당선시킬 수 있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기간 동안 501(c)(3)에 해당되는 단체의 역할은 교육적이어야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하여 501(c)(3)에 해당되는 단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직간접으로 특정 후보를 투표 하거나 언급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501(c)(3)에 해당되는 공공자선단체들의 합법적인 선거 활동들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 찬반 투표 작성에 영향을 주는 로비 활동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 해당 단체가 제기하는 선거 공약을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옹호하는 행위
- 해당 단체에 부여된 권한 내에서 공공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후보자 모두에게 교육하고 알리는 행위
- 특히 해당 단체가 과거부터 해온 전력이 있는 경우, 당선되어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
- 입법 투표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공공 교육과 훈련 과정을 공정하게 수행하는 행위
- 후보자에 대한 질문서를 준비하고 유권자 지침서를 만드는 행위
- 현재 진행중인 행위이고 특정한 후보나 정당만을 위해 계획된 것이 아닐 경우 다른 단체, 입법 의원,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합당한 시장 가치로 우편발송목록과 시설을 임대하는 행위
- 투표 참여와 유권자 등록 활동 독려를 공정하게 추진하는 행위¹
- 선거 공약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 후보자 토론회를 후원하는 행위
- 해당 단체의 입장을 각 정당의 정강에 반영하기 위해 모든 정치정당들과 협업하는 행위
- 선거가 임박해서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 의견을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는 조건에서 후보자를 언급하는 선거 운동용 방송 정보 통신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electioneering Communications이라고도 명기된다)²

¹ 본 요약보고서는 501(c)(3)에 해당되는 단체와 관련된 조항들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재단의 투표자 등록과 투표를 제고 활동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

- 유권자 보호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 501(c)(4)에 해당되는 관련 단체를 설립하여 특정 정당 선거 활동과 부가적인 활동 행위

미국세청은 찬반투표를 옹호하는 것을 선거 활동인 아닌 로비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501(c)(3)에 해당되는 공공 단체는 찬반투표를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지만 (각 단체의 로비 범위를 넘지 않는 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각 단체의 찬반투표제에 대한 입장을 후보자 또는 정치 정당과 연관 짓는 것을 피해야 한다.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할 수 없는 행위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는 반면, 해당 단체들이 할 수 없는 활동들이 몇 가지 있다. 501(C)(3)에 해당되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금지된다.

- 공직 후보자들을 지지하는 행위
- 선거운동에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행위(금전적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
- 후보자들을 대신하여 금전적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단체 소유의 우편발송 목록과 시설들의 임대를 제한하거나 후보자들과 유사 종류의 상거래를 최초로 수행하는 행위
- 후보자들에게 특정 공약에 대한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예를 들면 당선될 경우 “드림 법안 Dream Act을 지지할 것을 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사례)
- 선거일이 임박해짐에 따라 현직 재직중인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강도와 양을 증가시키는 행위
-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인쇄물과 방송정보물을 유포하는 행위
- 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보이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공약에 대해 공직후보자들 사이의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는 행위
- 후보자로서 자격에 대해 긍정적 또는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귀 단체가 특정 활동이나 방송통신활동이 명백하게 선거와 무관하다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공약을 옹호하는 행위
- 정책공약의 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현직 입법의원이나 당선 공직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공격하거나 후보자로서 자격을 공격함으로써 비판하는 행위

이 요약보고서와 다른 별첨 자료에 담긴 정보는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변호인과 의뢰인의 관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입장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본 정보는 귀하의 특정한 환경에 맞는 전문적인 법적, 세무적, 기타 상담을 대신하지 못하며, IRC(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해서 부과될 수 있는 벌과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정의를 위한 연대(Alliance for Justice)”는 비영리적 옹호 주제들에 대해 평이한 말로 된 지침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옹호활동을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을 제공하고, 옹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866-NPLOBBY, 정의를 위한 연대로 연락을 하기 바란다.

www.bolderadvocacy.org | www.allianceforjustice.org

² 연방정부 및 주정부 선거법은 종종 선거운동용 방송정보통신 내역(때때로 방송정보통신비용 지불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을 포함해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하며, 통신 비용을 지불한 신원 확인된 권리포기자들을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